

## 북유럽모델 관점에 따른 마이데이터의 쟁점 및 과제

### MyData from the Perspective of the Nordic Model: Issues and Lessons

이 한 영 (Han Young Lie)\*

#### 국문초록

본고는 북유럽모델을 중심으로 마이데이터의 핵심 쟁점을 검토하고, 그에 기초해 우리나라의 마이데이터 진전을 위한 정책적 교훈을 도출하고자 한다. 여타의 마이데이터 모델과 달리, 북유럽모델은 정보주체의 자기 개인정보에 대한 실효적 통제권 행사를 위해서는 정보보유자와 정보이용사업자 간의 개인정보 2차 거래에 대해서도 정보주체의 통제권 행사가 가능해야 함을 강조한다. 그러한 실효적 통제권은 마이데이터생태계의 상호호환성 및 신뢰성을 전제해야 하는 바, 개인정보이동권의 법제화, 승인관리프로그램의 동조화, 개인정보의 소유권 판별 등 주요 현안들에 대한 정교한 제도적·기술적 접근이 요구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나라의 금융 분야는 여타 분야와 대조적으로 단기간 내에 상당한 마이데이터 진전을 이룬 것으로 평가된다. 물론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도 상존한다. 특히, 개정 신용정보법이 새로 도입한 본인신용정보의 제3자 제공은 사실상 개인정보거래 대행서비스로서, 마이데이터의 당면 목표인 정보주체의 자기 개인정보에 대한 실효적 통제권 확보와의 양립성 제고 방안 모색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주제어:** 마이데이터, 북유럽모델, 개인정보이동권, API, 데이터 소유권

※ 논문접수일: 2020. 8. 11, 수정일: 2020. 9. 8, 게재확정일: 2020. 9. 9

\* 중앙대학교 경영경제대학 경제학부 교수, E-mail: [lee10@cau.ac.kr](mailto:lee10@cau.ac.kr)

**ABSTRACT**

This paper seeks to analyze pending issues with MyData and relevant policy lessons for Korea from the perspective of the Nordic Model. What separates the Nordic Model from other MyData models is the choice over how to secure data subject's effective control of personal data. The former requires data subject's control over the (second) transaction involving the handling of personal data between a data holder and a data utilizer, let alone the (first) transaction between the data subject and a data holder. Since interoperability and reliability of the MyData ecosystem are prerequisites for that purpose, sophisticated legal and technical norms must be advanced on such matters as right to data portability, consent management program, and data ownership.

MyData in Korea has been growing much more rapidly and successfully in the financial sector than in other sectors. There is more work to do, however. In particular, the transfer of personal credit information to third parties, newly overseen by the Credit Information Use and Protection Act, is conceptually not unlike an agency service involving a personal data transaction on behalf of a data subject. Important questions remain concerning how to enhance the compatibility of such transfers with MyData's ultimate goal of enabling data subjects to exercise effective control over their personal data.

**Key words:** MyData, Nordic Model, Right to data portability, API, Data ownership

## I. 서론

디지털경제(Digital Economy) 진전에 따라 새로운 자원에 대한 관심도 고조되고 있다. 다음 아닌, 데이터(data)이다.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컴퓨팅, 인공지능(AI) 등 ICT 분야의 비약적 기술발전에 힘입어 도처에서 실시간으로 생성되는 막대한 분량의 데이터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과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원동력으로 인식되고 있다. “데이터가 돈(currency)이다.”라는 주장도 제시된다.<sup>1)</sup>

데이터의 경제 기여도 제고를 위해서는 활용 가능한 데이터의 총량을 늘리는 것과 함께 데이터의 활용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물리적·제도적 환경이 전제되어야 한다. 특히 빅데이터(Big Data)의 근간인 개인정보의 활용도 제고에 적합한 환경 조성이 시급하다. 하지만 현실은 아직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 개인정보가 활용 대상이기에 앞서 보호 대상이라는 사회적 공감대가 오랜 동안 유지되어 왔기 때문이다. 물론 이러한 공감대가 양호한 개인정보보호로 이어졌는지는 별개의 문제이다. 기존 개인정보생태계가 개인정보의 활용 및 보호 측면에서 공히 만족스럽게 작동해 왔다고 단언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소위 ‘마이데이터(MyData)’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등장하게 되었다. 마이데이터는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수집, 저장, 가공, 활용 등 개인정보처리 전 과정에 대해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고, 그러한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무형 이익에 대해서도 합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정보주체 중심의 개인정보생태계 또는 그 하부구조(infrastructure) 구축을 표방한다. 그에는 보호 및 활용이라는 개인정보의 양면적 가치에 대한 조화로운 접근, 온라인플랫폼시장의 경쟁 활성화 등 시장의 간절 한 목소리도 담겨져 있다.

그런데 마이데이터 도입의 당위성을 논하기에 앞서 그 실체에 대한 이해조차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물론 이는 난해한 기술적·법적 요인들을 내재하는 마이데이터의 특성 과도 무관하지 않다. 마이데이터에 관한 통일된 국제적 기준 부재도 중요한 원인으로 지목할 수 있으며, 학술연구나 정책연구의 부족도 마이데이터의 확산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분명한 사실은 마이데이터가 정책당국이나 일부 전문가의 전유물로 남아있는 한, 마이데이터는 물론이고 디지털경제를 온전히 실현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1) Aaronson (2016), p. 1.

이러한 사정에 착안하여, 본고는 마이데이터 ‘북유럽모델(Nordic Model)’을 중심으로 마이데이터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필히 고려해야 할 쟁점 및 정책적 유념사항을 분석·제시하고자 한다. 북유럽모델을 분석의 기준으로 삼는 이유는 국제적으로 추진되어 온 마이데이터 모델 중 가장 야심찬 목표를 지향한다는 점 때문이다. 물론 그러한 목표의 실현 가능성이 제한적이라는 주장도 제기될 수 있다. 하지만 현 개인정보생태계의 문제점을 어떤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지에 대한 지향점으로서 북유럽모델이 갖는 실용적 가치는 평가절하 될 수 없다. 이는 독과점적인 시장구조를 개선하고자 할 때 후생 측면에서 가장 우월한 완전경쟁시장을 목표지를 설정하여 문제를 풀어나가는 경제학적 접근 관행과 유사하다.

본고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Ⅱ장에서는 마이데이터 도입의 일반적 배경 및 개념, 그리고 국제 동향을 살펴본다. 제Ⅲ장은 마이데이터 북유럽모델에 관해 상술하고, 제Ⅳ장을 통해 마이데이터 추진을 위한 주요 쟁점을 분석한다. 제Ⅴ장은 국내 마이데이터의 추진동향 및 현주소를 평가함으로써 정책적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제Ⅵ장은 본고의 논의에 대한 간략한 요약 및 맺음말을 위해 할애한다.

## Ⅱ. 마이데이터의 배경, 개념 및 국제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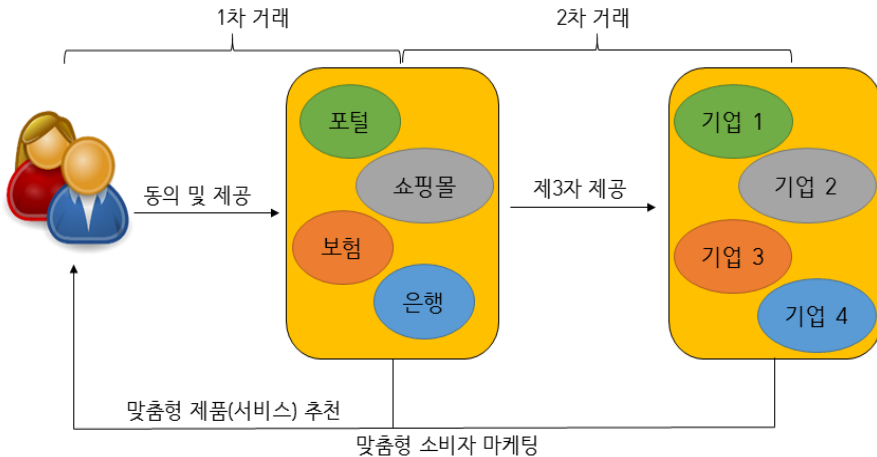
디지털경제로의 전환이 데이터 수집 및 활용에 관한 국제적 관심을 고조시키고 있다. 혹자는 ‘가상-물리 융합(cyber-physical convergence)’에 따라 천문학적으로 생성되는 데이터가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소비 편의성 및 유통비용 절감 등 국가경제 발전의 원동력이라는 사실에 착안하여 디지털경제를 ‘데이터경제(Data Economy)’로 달리 지칭하기도 한다. 데이터의 폭발적 증가가 인공지능(AI) 기술 발전과 맞물려 탄생시킨 새로운 비즈니스 영역이 빅데이터(Big Data)이다. 현재 시장에 등장한 빅데이터 비즈니스 사례는 로그분석, 맞춤형 재화 및 서비스 거래, 지능형 검색엔진, 인력채용 자동화, 보험사기 방지, 온라인 신문 구독자 관리 등 다양하지만,<sup>2)</sup> 향후 빅데이터 비즈니스의 확장성은 그 끝을 알기 어려울 정도이다.<sup>3)</sup>

2) [www.searchtechnologies.com/blog/big-data-use-cases-for-business](http://www.searchtechnologies.com/blog/big-data-use-cases-for-business).

3) 전 세계 빅데이터 비즈니스 시장규모는 2019년 현재 1,891억 달러에서 2022년에는 2,743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IDC (April 4, 2019).

온전한 디지털경제에 다가가기 위해서는 빅데이터의 핵심 구성요소라고 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보호 및 활용에 대한 균형 잡힌 접근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개인정보와 관련된 법제는 개인정보생태계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적 환경으로서 그 무게중심을 어디에 두는지에 따라 디지털경제 진전은 빨라질 수도, 느려질 수도 있다. 그런데 보호 및 활용이라는 개인정보의 양면적 가치를 담아내고자 기존 개인정보보호 법제 개선 노력이 경주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가치의 조화는 더디기만 하다.

<그림 1> 현행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방식



출처: 필자 작성.

가령 개별 소비자의 자기 개인정보에 대한 ‘실효적(effective)’ 통제권 문제는 아직도 풀어야 할 숙제이다. 정보주체는 서비스 이용을 위해 자기 신상정보를 제시하고 서비스공급자가 제시하는 이용약관에 동의하지만, 정보주체가 복잡한 이용약관을 세세히 살피고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정보주체는 이용약관 동의 후 수집되는 개인정보의 범위를 따지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수집된 개인정보가 어떤 제3자에게 어떤 조건으로 이전되는지, 이전된 개인정보보호가 제대로 보호되는지 등 개인정보의 2차 거래와 관련된 상황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한다. 개인정보 제공에 따른 혜택은 개인정보의 2차 거래에 수반되는 금전적 혜택이기보다 맞춤형 상품·서비스 추천 등 경제활동 편의성 제고에 국한된다.

개인정보의 활용 측면에서도 심각한 장애요소가 상존한다. 작금의 개인정보생태계는 일부 글로벌 온라인플랫폼사업자<sup>4)</sup> 중심의 시장구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네트워크효과(network effect) 및 고착효과(lock-in effect)가 강하게 작동하는 온라인플랫폼시장은 점점 더 많은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소수 선발사업자에게로 집중되는 특징으로 인해 신규사업자의 시장진입에 대한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개인과 기업이 특정 온라인플랫폼사업자와의 고리를 단절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이들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이 정보주체의 자기 개인정보에 대한 실효적 권리 주장을 보장할 수 있을 만큼 투명한 것도 아니다. 게다가 이들은 각기 다른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sup>5)</sup>를 유지함으로써 개인정보생태계 분절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최근 세간의 이목을 끌고 있는 새로운 접근방식이 ‘마이데이터 이니셔티브(MyData Initiative)’이다.<sup>6)</sup> 이는 정보처리기관 중심의 폐쇄적·집중형 개인정보관리시스템에서 정보주체 중심의 개방적·분산형 개인정보관리시스템으로 패러다임을 변경함으로써 개인정보 활용 촉진과 개인정보생태계의 공정경쟁 환경 구축을 지향한다. 참고로 마이데이터는 Self Data, Midata, MesInfos, PIMS(Personal Information Management Services), Personal Data Economy, Internet of Me 등 다양한 용어로 대표된다. 다만, 그 명칭의 상이성에도 불구하고, 정보주체에게 자기 개인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부여함으로써 정보주체 중심의 개방적·분산형 개인정보생태계를 추구한다는 공통점을 갖는다.

마이데이터의 개념 및 구체화 방식에 관해서는 아직 국제적으로 합의된 통일기준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정보주체 중심의 개방적·분산형 개인정보생태계를

4) FAANG(Facebook-Apple-Amazon-Netflix-Google), GAF(A-Google-Apple-Facebook-Amazon) 등이 지칭되곤 한다.

5) API는 특정 기관(기업)의 OS(Operating System)에 대한 타 기관(기업)의 응용 프로그램의 접근(연동)에 활용될 수 있는 해당 기관(기업)의 소프트웨어 모듈(module) 또는 인터페이스(interface)라고 정의할 수 있다. 여기에서 모듈은 재사용 또는 공유가 가능한 수준의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라고 규정된다. 따라서 특정 기관(기업)의 API 공개는 그 자체로 자신의 OS에 대한 타 기관(기업)의 응용 프로그램 접근을 구현하는 응용 프로그램 개발자의 개발기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게 하는 순기능을 발휘한다. 하지만 API 공개만으로는 생태계 분절화 및 특정 기관(기업)에의 고착효과 극복이 쉽지 않다는 점에서 API 표준화가 동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6) 이하, 간략히 ‘마이데이터’라고 지칭함.

구현하기 위해 개인정보 유통 및 관리를 주도적으로 담당하는 주체를 누구로 보아야 할지에 관해서는 마이데이터 모델 간 일부 차이가 존재한다. 대부분의 국가들에서는 정부가 주요 행위자로 나서는 반면, 프랑스의 MesInfos 추진방식은 민간주도에 가깝다. 영국의 Midata는 민간주도의 개인정보생태계 구현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프랑스의 MesInfos와 맥락을 같이 하지만, 정부가 주요 행위자로 나선다는 점에서 제한적 의미의 민간주도적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sup>7)</sup>

현재까지 등장한 민간주도적 모델 가운데 가장 진보적 아이디어를 담고 있는 것은 단연 핀란드의 ‘북유럽모델(Nordic Model)<sup>8)</sup>이다. 북유럽모델은 모든 산업 분야에서 공통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개방적·분산형 개인정보생태계 구축, 개인정보의 상호호환성(interoperability) 및 이동성(portability) 보장, 글로벌 온라인플랫폼사업자 중심의 개인정보생태계 극복, 개방적·분산형 개인정보생태계에 적합한 개인정보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추구한다.<sup>9)</sup> 하지만 여타의 마이데이터 모델과 분명하게 대비되는 북유럽모델의 혁신성은 개인정보의 2차 거래와 그로부터 발생하는 금전적 수익에 대한 정보주체의 적극적 권리를 명시화한 대목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여타 주요국의 마이데이터 모델들이 개인정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정보주체의 권리 강화 및 경제활동 편의성 제고라는 긍정적 측면을 공통적으로 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sup>10)</sup> 이들은 개인정보의 2차 거래에서 발생하는 금전적 수익 배분에 관해서는 대체로 함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북유럽모델만큼의 혁신성을 담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sup>11)</sup> 물론 일본의 정보은행(Data Bank)은 개인정보의 2차 거래에서 유발되는 금전적 수익 배분을 구체화한 모델이지만, 개인정보의 정보은행 신탁을 전제한다는 점에서 마이데이터의 근본취지인 정보주

7) 자세한 내용은 조성은·정원준·이시직·이창범·박규상 (2019), pp. 29~48을 참고할 것.

8) 북유럽 모델을 제시한 관련문헌은 스스로의 마이데이터 접근방식을 ‘진보적 접근방식(progressive approach)’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Poikola, et al. (2015), p. 4.

9) 이는 ‘인간 중심의 개인정보 통제(Human-Centric Control of Personal Data)’를 최우선 원칙으로 밝힌 유럽 ‘PIMS공동체(Personal Information Management Services Community)’의 2017년 ‘마이데이터 선언(Declaration of MyData Principles)’과도 맥락을 같이 한다.

<https://MyData.org/declaration>.

10) Mint, Credit Karma, Cardlytics, Yodlee, Plaid 등 다수의 미국 기업들은 마이데이터 비즈니스의 일환으로 개인정보처리를 중개(intermediation)하는 ‘개인자산관리(Personal Financial Management)’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11) 국내 금융 분야에서 도입되고 있는 마이데이터 비즈니스도 유사한 성격을 가진다. 이에 관해서는 후술하며, 자세한 내용은 금융위원회 (2018. 11.)를 참고할 것.

체의 자기 개인정보에 대한 의사결정권 행사에 기본적으로 배치된다는 한계를 갖는다.<sup>12)</sup>

### Ⅲ. 마이데이터 복유립모델의 주요내용

#### 1. 기본구조 및 특징

복유립모델에 따른 새로운 개인정보생태계<sup>13)</sup>는 크게 정보주체(data subject), 정보보유자(data holder), 마이데이터사업자(MyData operator) 및 정보이용사업자(data utilizer) 등으로 구성된다.<sup>14)</sup> 여기에서 정보주체는 단순히 자기 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스스로에 관한 실시간 개인정보를 유발하는 자연인에 그치기보다 이러한 개인정보 활용에 관한 포괄적·실효적 의사결정권을 동시에 보유하는 관리자이다. 이러한 마이데이터생태계의 모습은 정보주체가 자기 개인정보의 2차 거래에 대해 실질적 통제권을 발휘하지 못하는 현행 개인정보생태계와 근본적으로 상이한 부분이다.

복유립모델 기본구조 하에서, 정보보유자, 마이데이터사업자 및 정보이용사업자 등 마이데이터생태계 내의 나머지 당사자는 정보주체의 지침에 따라 각자의 이익을 위해 합목적적으로 행동하는 주체이다. 정보보유자는 정보주체로부터 원시 개인정보를 수집, 가공 또는 보유하는 개인정보 1차 거래의 일방 당사자이자 그러한 개인정보를 정보이용사업자에게 제공하는 2차 거래의 일방 당사자이기도 하다. 정보이용사업자는 정보보유자에게 모종의 대가를 지불하고 개인정보를 이전받아 활용하는 개인정보 2차 거래의 일방 당사자로서 정보주체 입장에서는 제3자이다. 물론 정보보유자가 스스로의 상업적 이익을 위해 원시 또는 가공 개인정보를 직접 활용하는 경우에는 정보보유자와 정보이용사업자의 역할은 중첩될 수도 있다.

복유립모델의 결정적 특이성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거래를 조력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마이데이터사업자라는 당사자가 개인정보생태계에 새로이 등장한다는 사실에서 찾아볼 수 있다. 마이데이터사업자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거래 분야 전문

12) 일본 정보은행에 관한 내용은 한국인터넷진흥원 (2018)과 前掲書 7, pp. 52~71을 참고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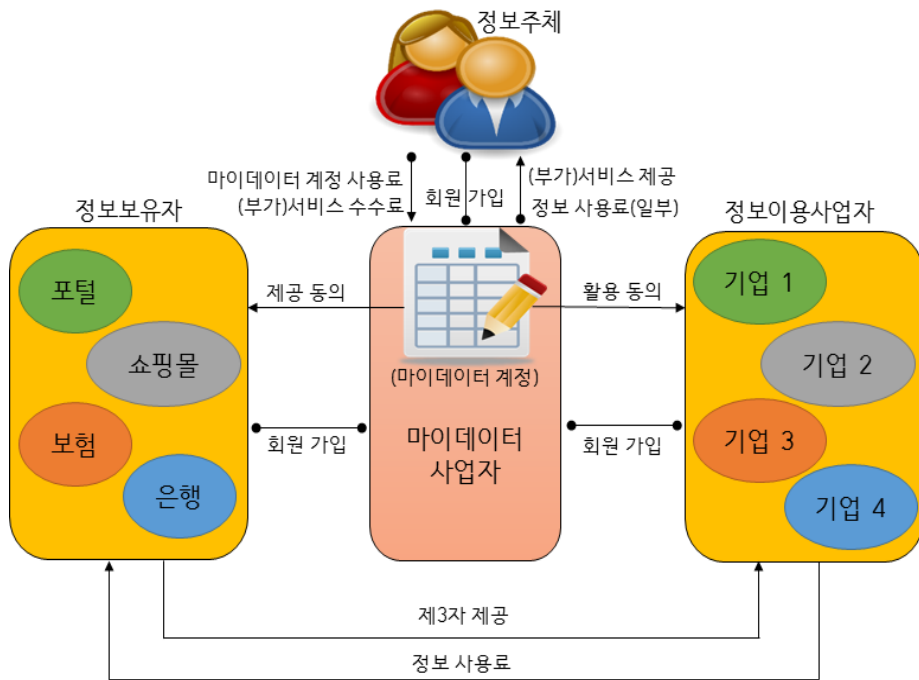
13) 이하, ‘마이데이터생태계’로 지칭함.

14) 참고로 前掲書 8(p. 6)에서는 정보보유자를 ‘data source’, 정보이용사업자를 ‘services using data’로 표현하고 있다.



중개인(middleman)이다. 그 필수적 역할은 정보주체에게 마이데이터 계정(MyData account)을 제공하는 것이다. 마이데이터 계정은 개인정보처리 과정 전반에 걸쳐 정보주체가 자기 개인정보의 수요자 및 공급자와 의사소통하게 하는 창구이자, 개인정보처리에 관한 자신의 의사결정 사항을 이들에게 전달하는 지휘소이다. 예컨대, 스마트폰이용자가 스마트폰의 특정 애플리케이션 작동을 켜고 끄는 것과 같이 정보주체는 마이데이터 계정의 이용자 인터페이스(UI: User Interface)를 통해 그때그때 특정 개인정보 공유를 활성화시키거나 차단할 수 있다.<sup>15)</sup>

<그림 2> 마이데이터 복유립모델의 기본구조



출처: 필자 작성.

마이데이터 계정은 정보이용사업자가 정보주체에게 특정 개인정보의 활용 의사를 전하거나, 그러한 의사를 접한 정보주체가 정보보유자로 하여금 해당 개인정보 전달을 지시하거나 또는 정보이용사업자에게 해당 개인정보 활용 동의 사실 및

15) 前掲書 8, p. 9.

조건을 전달하는 개인정보생태계의 중심 하부구조인 셈이다. 물론 개인정보거래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정보보유자나 정보이용사업자도 스스로의 상업적 고려에 부합하는 마이데이터사업자를 선택해 각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와 연동할 수 있어야 한다. 만일 정보주체, 정보보유자 및 정보이용사업자가 기존의 마이데이터사업자의 서비스 내용에 만족하지 않는다면, 자유로이 마이데이터사업자를 변경할 수도 있어야 한다. 이는 복유립모델이 소수 선발사업자 중심의 독과점적 개인정보생태계로부터 경쟁친화적인 개인정보생태계로의 변화를 모색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 2. 마이데이터사업자의 역할 및 서비스 구성

마이데이터의 온전한 작동을 위해서는 정보주체가 마이데이터 계정을 중심으로 개인정보 흐름을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마이데이터사업자는 두 가지 기술적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한다. <그림 2>의 마이데이터 복유립모델의 기본구조를 전제로, 예컨대 정보보유자가 특정 개인정보 활용을 원하는 제3자(정보이용사업자)로부터 해당 개인정보 제공을 요청받는 경우, 안심하고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기 위해 어떤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설명해보자. 첫째, 정보보유자는 그러한 제3자가 해당 정보주체로부터 정당한 동의를 득한 사용자자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정보보유자는 그러한 제3자가 사전에 정보주체로부터 통보받은 주체와 일치하는 본인인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두 가지 확인 절차는 다름 아닌 ‘승인(authorization)’과 ‘인증(authentication)’이다.<sup>16)</sup> 물론 승인과 인증은 앞서 예시한 정보보유자-정보이용사업자 간에만 요구되는 절차라기보다 마이데이터의 작동방식 여하에 따라서는<sup>17)</sup> 마이데이터생태계의 구성원 간에 다양하게 적용되어야 하는 절차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거래를 조력하는 마이데이터사업자는 승인과 인증 절차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기술적 수단인 ‘승인관리시스템(consent management system)’을 구축

16) 승인(authorization)은 특정거래의 일방 당사자가 타방 당사자의 특정행위에 대해 동의함을 나타내는 용어인 반면, 인증(authentication)은 특정 자연인, 객체 또는 사실의 진정성을 식별하기 위한 목적에서 사용되는 용어로서 쉽게 말해 ‘본인 확인’을 위한 기술적 절차이다. 경우에 따라 승인과 인증을 포괄해 간략히 승인이라고 지칭하기도 한다.

17) 가령, 정보주체가 직접 개인정보거래를 통제하는 대신 마이데이터사업자로 하여금 개인 정보거래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정보보유자는 마이데이터사업자에 대해 승인과 인증 절차를 적용하게 된다.

해야 한다.<sup>18)</sup> 정보주체는 마이데이터 계정 및 승인관리시스템을 통해 정보보유자 및 정보이용사업자에게 각각 자기 개인정보의 이전 범위 및 사용 조건에 대한 지침을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기술적 수단을 보유하게 된다. 즉, 마이데이터 계정 및 승인관리시스템 제공은 마이데이터사업자에게 요구되는 가장 중요하고도 기본적인 서비스 항목들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정보주체 중심의 개인정보생태계 작동을 위해서는 마이데이터사업자라면 예외 없이 갖추어야 할 서비스 항목들이 더 있다. 정보주체가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 목록(service registry)’은 그 중 하나이다. 정보주체는 자기 개인정보를 누구와 어떻게 거래해야 하는지를 잘 알지 못한다. 마이데이터사업자가 정보주체에게 다양한 개인정보거래 기회를 유형화하여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는 정보주체는 물론이고 마이데이터사업자 스스로의 수익 창출에도 도움이 된다. 한편, 마이데이터 비즈니스의 확장성을 위해서는 더 많은 정보주체, 정보보유자 및 정보이용사업자가 마이데이터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마이데이터 계정, 승인관리시스템 및 가용 서비스 목록을 이해하기 쉽고, 사용하기 편리한 이용자 인터페이스(UI)를 구축해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다면 마이데이터 비즈니스로부터 마이데이터사업자가 취할 수 있는 수입원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마이데이터 계정 사용료, 개인정보거래에 따른 정보 사용료<sup>19)</sup> 등은 마이데이터사업자의 일차적 수입원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마이데이터 비즈니스의 유지가능성(sustainability) 차원에서는 좀 더 다양한 부수적 수입원 발굴이 바람직하다. 즉, 마이데이터사업자는 정보주체, 정보보유자 및 정보이용사업자에게 다양한 부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마이데이터 비즈니스의 경쟁력 및 수익성을 높일 수 있다. 그러한 부대서비스에는 <그림 3>에서와 같이 개인정보거래 대행서비스, 개인정보저장서비스(PDS: Personal Data Storage) 제공서비스, 데이터 변환·가공서비스, 정보보유자 및 정보이용사업자 발굴 및 프로파일링 등이 포함될 수 있다.<sup>20)</sup>

18) 물론 개인정보거래 당사자들이 승인관리시스템을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기 위해서는 마이데이터생태계 내의 당사자들이 승인관리시스템과 관련된 API를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

19) 마이데이터사업자는 정보주체 및 정보보유자와의 계약 조건에 따라 개인정보거래에서 유발되는 정보 사용료 일부를 취할 수 있다.

20) 前掲書 8, p. 8.

<그림 3> 마이데이터 복유립모델의 서비스 구성



출처: 前掲書 8, Figure 6.2를 일부 수정하여 작성함.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거래 대행은 상업적으로 마이데이터사업자에게 가장 매력적인 부대서비스가 될 수 있다. 개인정보거래 대행서비스는 개인정보처리와 관련하여 정보주체와 마이데이터사업자 간 존재하는 ‘정보 비대칭성(information asymmetry)’에 착안한 서비스 항목이다. 이는 정보가 부족한 정보주체가 개인정보거래를 직접 통제할 경우 수반되는 효율성 제약을 극복하면서도 정보주체 및 마이데이터사업자 모두에게 개인정보거래의 수익성을 제고할 수 있는 유인책을 제공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거래 대행서비스는 정보주체의 자기 개인정보에 대한 실질적 통제권 확보를 모색하는 복유립모델 마이데이터의 기본취지에 배치되는 요소가 존재한다. 개인정보거래의 위임에 따른 개인정보 누출 위험과 그에 따른 정보주체의 통제권 약화 가능성이 내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인정보거래 대행서비스가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마이데이터사업자에게 강화된 도덕성 및 보안 능력을 요구하는 것이 요구된다.

추가적으로 마이데이터사업자는 정보주체에게 정보보유자의 원시 개인정보를 직접 이전받아 저장할 수 있는 서버용량을 임대하는 개인정보저장서비스(PDS)를 제공하거나, 그러한 원시 개인정보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정보주체에게 개인

정보 변환·가공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을 것이다.<sup>21)</sup> 또한 개인정보거래에 관한 전문성이 부족한 정보주체가 인지하지 못하는 개인정보의 잠재적 수요자(정보이용사업자) 또는 공급자(정보보유자)를 발굴하고, 이들 기관(기업)의 성격 및 거래 수요에 관한 세부 정보를 분석해 정보주체에게 제공하고 그에 따른 수수료를 취할 수도 있을 것이다.

#### IV. 마이데이터의 핵심 쟁점

기존 개인정보생태계 하에서 구매자인 정보주체는 은행, 보험, 포털, 쇼핑몰 등 물품·서비스 판매자(기업)의 개인정보취급방침(이용약관)에 동의하지 않으면 물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렵다. 정보주체가 판매자의 개인정보처리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정보주체는 이용약관 거부권 행사 불가 상황 이외에도 이용약관의 난해성 등으로 인해 기업이 수집한 자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2차 거래)에 대해 적극적인 권리를 행사하기도 어렵다. 이로 인해 정보주체가 맞춤형 서비스 추천 등 판매자가 제공하는 제한적 보상에 만족하게 되는 관행에 대해 별다른 문제제기도 없는 실정이다. 하지만 정보주체의 자기 개인정보에 대한 실효적 권리 부재는 마이데이터 복유립모델의 근본가치와 상충한다. 아래에서는 마이데이터생태계의 상호호환성 확보 관점에서 특히 중요한 개인정보이동권, 승인관리프로그램 및 개인정보 소유권을 둘러싼 현안과 정책적 유념사항을 검토하고자 한다.

##### 1. 개인정보이동권 법제화

마이데이터의 관점에서 개인정보거래 전반, 특히 개인정보의 2차 거래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을 위한 선행조치의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EU의 개인정보보호법(GDPR: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sup>22)</sup>은 그에 관한

21) 개인정보저장서비스(PDS) 및 데이터 변환·가공의 경우에도 개인정보가 마이데이터사업자의 직·간접 관리대상으로 전환된다는 점에서 개인정보거래 대행서비스와 유사한 위험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22) REGULATION (EU) 2016/679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다름 아닌 개인정보이동권(right to data portability) 조문<sup>23)</sup>으로서, 이는 정보주체의 자기 개인정보에 대한 능동적 권리 행사 및 개인정보의 활용도 제고 차원에서 도입된 법적 근거이다.<sup>24)</sup> 그에 따르면, 정보주체는 컨트롤러(controller)<sup>25)</sup>로 하여금 자기 개인정보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로 이전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며, 이를 위해 그러한 개인정보는 “구조화되고, 보편적으로 사용되며, 기계판독이 가능한 형식(structured, commonly used and machine-readable format)”으로 준비되어야 한다.<sup>26)</sup>

쉽게 말해, 개인정보이동권은 단순히 자기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및 활용을 위한 정보주체의 권리를 담보하기 위한 목적은 물론이고, 정보보유자에게 그러한 권리 행사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까지를 내재하는 이중적 개념이라고 해석될 수 있다. 정보보유자가 정보주체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파일형식(file format)을 특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컴퓨터기기(computing machines)에 의한 처리가 불가하거나, 또는 가능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범용 파일형식에 의하지 않는 개인정보는 그 자체로 마이데이터생태계의 상호호환성을 저해하는 중대한 걸림돌이 아닐 수 없다. 즉, 기계판독 가능한 범용 파일형식의 개인정보 제공이 전제되어야만 비로소 정보주체가 온전한 개인정보이동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sup>27)</sup>

현 시점에서 권고할 수 있는 가장 범용성이 높은 기계판독 가능한 파일형식

---

of 27 April 2016 on the protection of natural persons with regard to the processing of personal data and on the free movement of such data, and repealing Directive 95/46/EC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O.J. [2016] L. 119/1. 이하 ‘GDPR’로 표기함.

23) GDPR Article 20.

24) 이한영·차성민 (2018), p. 170.

25) 컨트롤러는 개인정보처리 목적과 수단을 결정하는 주체이다. 참고로 프로세서(processor)는 컨트롤러의 지시에 따라 개인정보처리를 대행하는 주체이다. 자연인, 법인, 정부부처 및 관련기관, 기타 단체 등이 컨트롤러 및 프로세서가 될 수 있다. GDPR Article 4(7), 4(8).

26) “The data subject shall have the right to receive the personal data concerning him or her, which he or she has provided to a controller, in a structured, commonly used and machine-readable format and have the right to transmit those data to another controller without hindrance from the controller to which the personal data have been provided ~ .”, GDPR Article 20.

27) 이는 마이데이터 확산 차원에서 일반적으로 거론되는 데이터 공개(open data)가 데이터에 대한 ‘접근(access)’ 보장이기보다 데이터에 대한 ‘기계적 접근성(machine accessibility)’ 보장으로 해석되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은 JSON(JavaScript Object Notation)<sup>28)</sup>이다. JSON은 XML(eXtensible Markup Language)<sup>29)</sup>에 비해 동일한 정보를 표현하기 위해 소요되는 데이터 용량이 작기 때문에 XML에 비해 압축률이나 응답속도 측면에서 우월하다고 알려져 있다. 직렬화(serialization)<sup>30)</sup> 방식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 직렬화 방식은 현실적으로 정보처리주체 간 단일화가 용이하지 않다는 점에서 이를 정보보유자의 재량을 맡기는 시장방임도 고려해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를 전적으로 정보보유자의 재량에 맡길 경우, 마이데이터생태계의 분절화 및 독점화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개인정보의 파일형식(JSON)과 직렬화 방식의 표준화를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파일형식, 직렬화 방식 등에 더해 데이터 구조화 형식에 대해서도 신중해야 한다. 엄밀히 말해, JSON은 이미 구조화된 데이터(structured data)에 관해 적용하는 파일형식일 뿐이며, 데이터 구조화 자체는 원칙적으로 정보처리주체가 각자의 재량 하에 추진하는 문제이다. 하지만 모든 정보보유자들이 동일한 데이터 구조화 기준을 채택하고 있다면, JSON이라는 파일형식의 적용이 훨씬 수월해질 것임은 분명하다. 이를 위해 정보보유자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는 데이터 구조화 표준 지침 같은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겠으나, 데이터 구조화 형식은 특히 각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비즈니스 특성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는 점에서 그에 관한 규제는 바람직하지도 않거니와 실현 가능성도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28) JSON은 데이터 저장 및 전송을 위해 사용되는 대표적인 파일형식(text format) 중 하나로서 특히 데이터가 서버로부터 웹페이지로 전송되는 과정에서 자주 활용된다.

<https://json.org/json-ko.html>.

29) ‘마크업 언어(Markup Language)’는 전통적 인쇄 과정에서 식자공이 제목, 소제목, 본문 활자체 및 크기 등을 알아볼 수 있도록 편집자가 초고에 기입한 표시를 의미한다. 컴퓨터 환경을 전제한 마크업 언어는 웹문서에 포함될 텍스트를 정의하는 어휘와 기호로 구성된다. 최초의 마크업 언어는 SGML(Standard Generalized Markup Language)로서 1969년 미국 IBM이 사내 주요 문서를 쉽게 교환하고 관리하고자 만든 것으로 1896년 ISO 표준으로 제정되었다. XML은 1996년 W3C가 SGML에 기초해 제안한 웹 문서 구조화를 위한 사실표준(de facto standard)이다.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441343&cid=42081&categoryId=42081>.

30) 직렬화(serialization)는 원시정보를 데이터베이스, 메모리 등 장치에 저장할 수 있도록, 또는 인터넷 등 네트워크로 전송할 수 있는 형식으로 변환하는 소프트웨어적 절차를 말한다. 그 반대인 역직렬화(deserialization)는 데이터베이스, 메모리 등 장치에 저장되거나, 또는 네트워크로 전송받은 직렬화 정보로부터 당초의 원시정보를 재생하는 소프트웨어적 절차이다.

## 2. 승인관리프로그램 동조화

마이데이터생태계가 설령 개인정보의 직렬화 방식, 구조화 형식 등을 포함한 파일 형식 동조화와 개인정보이동권 보장을 실현해낸다 하더라도, 그 구성원 간 상이한 소프트웨어 아키텍처(architecture)를 방치한 상태에서는 마이데이터생태계의 온전한 상호호환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그러한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는 크게 OS (Operating System)와 응용 프로그램을 주축으로 하며, 최소한 OS에서는 마이데이터생태계의 상호호환성이 문제되지 않을 정도의 통합은 이미 이루어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결국 마이데이터생태계의 상호호환성은 그 구성원들이 운용하는 응용 프로그램 간 동조화(synchronization) 정도와 직결된다. 특히 개인정보 흐름을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제어하기 위해 요구되는 승인관리프로그램의 동조화는 마이데이터생태계의 상호호환성은 물론이고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는 관건이다.

승인관리프로그램의 API 통합<sup>31)</sup>은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최우선 과제이다. 문제는 기존 개인정보생태계 구성원들이 활용해 온 기존 승인관리프로그램이 API를 활용하는 방식에 의하기보다 주로 특수한 대안적 기법에 의존해 왔다는 것이다. ‘스크린 스크레이핑(screen scraping)’이 그것이다. 이는 쉽게 말해 정보보유자의 웹사이트 화면에 보이는 개인정보들 가운데 필요한 것들을 ‘스크랩(copy and paste)’하는 식으로 수집하는 기법으로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수집을 위해 활용된다는 점에서는 API 활용 방식과 다르지 않다. 참고로 국내외 대다수의 핀테크 업체들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스크린 스크레이핑 방식을 채택해 왔다. 하지만 스크린 스크레이핑 방식은 자기 개인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자기결정권 행사, 개인정보 수집의 효과성 및 신뢰성 담보 등의 측면에서 정보보유자의 OS(Operating System)에 제3자의 응용 프로그램을 직접 연동하는 API 활용 방식에 비해 취약하다고 알려져 있다.<sup>32)</sup> 이해 제고 차원에서 은행이 보관하는 개인의 금융정보를 대

31) 구체적으로 API의 공개 및 표준화를 의미한다.

32) 아래와 같은 가설적 상황을 통해 스크린 스크레이핑 방식과 API 활용 방식을 이해해보자. A(정보주체)가 B(마이데이터사업자)로 하여금 C(정보보유자)의 물탱크에 분리 저장된 A 소유의 물(개인정보)을 옮겨 오도록 심부름을 시킨다고 하자. C(정보보유자)는 물탱크에 일정한 형태의 파이프 연결구를 만들어 놓고 있다. B가 물을 담아가기 위해 활용 가능한 수단은 양동이(스크린 스크레이핑 방식)와 파이프(API 활용 방식)이다. B가 물을 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스스로가 A의 정당한 심부름꾼인지를 C(정보보유자)에게 입증해야 한다. 수단별 입증 방법은 다음과 같다. B가 양동이를 가져오는 경우, C는 양동이에 표시된 A의 신상정보를 확인하는바, A는 사전에 양동이에 이를 기재해야 한다. 이



상으로 스크린 스크레이핑 방식과 API 활용 방식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비교·평가해보자.

스크린 스크레이핑 방식의 경우, 서비스공급자(예컨대, 본인신용관리업자)는 정보주체의 거래은행 계좌정보 화면과 매우 흡사한 웹사이트 화면을 컴퓨터나 단말기에 띄워 정보주체로 하여금 로그인 정보를 입력하도록 요구하게 된다. 그러한 유사 화면은 실제로는 해당 거래은행의 도메인이 아니라는 점에서 스크린 스크레이핑 방식은 사실상 서비스공급자들이 정보주체 계좌에 대리 접속하는 것과 같다.<sup>33)</sup> 반면 API 활용 방식에 의하는 경우, 정보주체는 서비스공급자가 요청하는 개인정보 수집에 관한 일반적 사전고지·동의 절차를 거쳐 연결된 해당 거래은행의 실제 웹사이트 상에서 직접 자신의 로그인 정보를 입력한다.<sup>34)</sup> 즉, 전자에 의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신상정보(민감정보)가 부지불식 중 서비스공급자에게 제공·보관됨으로써<sup>35)</sup> 서비스공급자의 불법적인 정보주체 계좌 접근이나 해킹에 의한 개인금융정보 누출 등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결론적으로 스크린 스크레이핑 방식은 마이데이터의 근본취지인 자기 개인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실효적 통제권 보장 차원에서는 물론이고 개인정보보안 차원에서도 지양해야 할 관행이라고 사료된다.<sup>36)</sup>

경우, 심부름꾼인 B도 양동이에 기재된 A의 신상정보를 볼 수 있다. 반면 연결구에 맞는 파이프를 가져오는 경우, C는 B가 정당한 심부름꾼인지를 별도의 채널로 A에게 직접 확인하기 때문에 심부름꾼인 B는 A의 신상정보를 볼 수 없다. 물론 그러한 파이프 제작은 C가 파이프 연결구의 표준규격을 공개해야만 가능하다. 상기 가설적 상황에 기초할 때, API 활용 방식은 개인정보 수집의 효율성 및 개인정보 누출 위험 측면에서 스크린 스크레이핑 방식에 비해 우월한 선택지이다.

33) 금융위원회 (2018. 7. 19.), p. 11.

34) 즉, API 방식 하에서는 정보주체인 본인과 그 거래은행만이 자기 금융정보 접근을 위한 로그인 정보를 보유한다.

35) 예컨대, 정보주체는 은행거래통합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 특히 인증절차를 거치면서 비밀번호 등 인증정보(본인신상정보)를 입력하게 되는데, 정보주체는 인증정보 반복 입력에 따른 불편을 피하기 위해 별다른 고려 없이 서비스공급자의 인증정보 보관에 기계적으로 동의하곤 한다.

36) 추가적으로 스크린 스크레이핑 방식은 정보보안 측면에서도 취약하다. 이 방식 하에서 만일 서비스공급자가 보관하는 정보주체의 로그인 정보가 해킹에 의해 누출되는 경우, 정보주체는 사실상 패스워드 변경을 통해서만 추후의 유사한 위협에 대응할 수 있다. 반면 API 활용 방식 하에서는 정보주체로부터 승인을 득한 서비스공급자는 ‘접근암호(access token)’를 부여받게 될 뿐이므로 해킹 시 접근암호 무효화 조치를 취해 로그인 정보 누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인관리프로그램의 통합에 관한 한 시장방임에 의해 API 활용 방식 중심으로 가져가는 것은 그 실현 가능성을 장담하기 어렵다. 실제로 초보적 마이데이터 비즈니스를 운영 중인 국내의 핀테크 업체들은 API 활용 방식로의 전환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보이고 있는바,<sup>37)</sup>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보보유자에 따라서는 자신이 보유하는 개인정보의 제3자 활용을 허용하기보다 독점하는 것이 우월한 선택일 수 있다. 물론 정보보유자가 제3자의 개인정보 활용을 자발적으로 용인할만한 유인도 존재한다. 스스로의 상업적 이익 실현에 유익한 비즈니스 네트워크 구축 및 확장을 위해 유리할 경우에는 그러할 수 있다.<sup>38)</sup> 하지만 정보보유자가 개인정보 공유로 인해 스스로의 비즈니스 경쟁우위가 훼손될 수 있다고 판단할 개연성도 없지 않다. 그러한 경우 정보보유자가 자신의 OS와 상호호환 가능한 제3자의 응용 프로그램 제작에 활용되는 API의 공개 및 표준화에 대해 반대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에 가깝다.

둘째, 마이데이터사업자 입장에서도 API 활용 방식에 대한 거부감을 가질 수 있다. 엄밀히 말해, 마이데이터사업자는 크든 작든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자신의 비즈니스 수익성을 우선하는 상업적 주체이다. 그런데 정보주체의 로그인 정보에 접근할 수 없는 API 활용 방식 하에서 개인정보거래의 실효적 통제권은 오롯이 정보주체에게 귀속되므로 마이데이터사업자는 전문 중개인으로서의 소극적·수동적 역할에 만족할 수밖에 없다. 설령 정보주체의 위임에 의해 마이데이터사업자가 개인정보거래 대행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더라도, API 활용 방식의 작동원리 상 마이데이터사업자 스스로의 상업적 이익 창출을 위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독단적으로 그 개인정보에 접근·활용하기는 어렵게 된다.

셋째, 개인정보 흐름을 안전하게 통제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널리 활용하고 있는 승인 및 인증에 관한 범용 공개표준은 OAuth(Open Authorization) 2.0이다.<sup>39)</sup> 혹자

37) 전자신문 (2019. 1. 31.).

38) 예컨대, 다양한 사업자들이 채택하고 있는 멤버십 제도는 고객유치·관리 전략의 일환으로 이해할 수 있다.

39) 서비스공급자(정보보유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이전받고자 하는 마이데이터사업자, 정보이용사업자 등 제3자가 정보주체로부터 정당한 동의를 얻은 유자격자인지(승인), 사전에 정보주체로부터 통보받은 주체와 일치하는 동일인인지(인증)를 식별하기 위해 2007년 초안 (OAuth 1.0)이 제작 이후 업데이트된 수정본 공개소프트웨어 표준(기술)이다. 간편하다는 장점으로 인해 다양한 인터넷서비스 분야의 승인관리를 위해 보편적으로 활용되어 왔다. OAuth와 춤을 (2012. 3. 15.).

는 마이데이터 비즈니스 업계가 범용 공개표준인 OAuth 2.0을 수용하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을 것으로 추정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개연성이 높다. OAuth 2.0이 기본적으로 API를 활용한다는 점에서<sup>40)</sup> API에 의존하지 않는 스크린 스크레이핑 방식 중심으로 비즈니스를 수행해 온 핀테크 업체 등 업계로부터의 저항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 3. 개인정보 소유권 판별

자기 개인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실효적 통제권 확보는 근본적으로 정보주체가 합법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자기 개인정보의 범위를 분명하게 규정할 수 있어야 달성 가능한 목표이다. 즉, 개인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배타적 권리가 분명하게 재단될 수 없다면, 마이데이터 활성화라는 목표는 근간에서부터 흔들릴 수밖에 없다.

그런데 개인정보를 포함한 데이터는 다수의 경제주체들이 이를 공유함으로써 확대 재생산할 수 있는 비경합재(non-rivalrous goods)<sup>41)</sup>로서 그에 대한 배타적 소유권 부여가 오히려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결과를 저해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진다.<sup>42)</sup> 이는 데이터 소유권(data ownership)을 법령으로 보장한 국내외 사례가 부재한 상황은 물론이고, 복유립모델을 포함한 다수의 마이데이터 모델이 개인정보 소유권 문제에 관해 대체로 적극적인 언급을 자제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대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 소유권을 둘러싼 법적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이상 설령 법령을 통해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이동권을 보장한다 해도 그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개인정보 소유권 문제를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필요성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데이터 소유권 문제 논의를 위해서는 데이터 유형 분류에 관해 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틴 아브람스(Martin Abrams)에 따르면<sup>42)</sup>, 데이터는 크게 제공 데이터(provided data)<sup>43)</sup>, 관찰 데이터(observed data)<sup>44)</sup>, 파생 데이터(derived data)<sup>45)</sup>, 추론 데이터

40) 이를 구동하기 위해 필요한 모듈은 API 및 SDK(Software Development Kit)로 구성된다.

SDK는 OAuth 2.0을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머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일반적으로 Java, Python, Ruby, PHP, HTTP/REST 등 컴퓨터 언어별로 제공된다.

41) 임준 (2019), p. 21.

42) Abrams (2016).

43) "Provided data originates via direct actions taken by the individual in which he or she is fully

(inferred data)<sup>46)</sup> 등 4개 유형으로 구분된다.<sup>47)</sup> 참고로 데이터 소유권을 둘러싼 초기 법적 논란은 제공 데이터 및 관찰 데이터를 중심으로 제기되었으나, 빅데이터 등장 이후에는 파생 데이터 및 추론 데이터에 관한 소유권 논란이 빈번해 지고 있다. 이는 디지털경제 진전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하에 수집된 원시 데이터에 기초해 새로운 유형의 데이터가 쉽 없이 생산되고 있으며, 데이터 소유권 관점에서는 특히 후자가 더 문제되기 때문이라고 풀이된다.<sup>48)</sup>

아래에서는 현재까지 제시된 주요국 판례를 중심으로 데이터 소유권에 관한 어림기준(rule of thumb)을 제시함으로써 개인정보 소유권에 관한 후속 연구 및 논의 진전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결론부터 간단히 말하자면, 주요국 판례는 비경합재 성격을 근간으로 하는 데이터 자체에 대한 배타적 권리가기보다 데이터 자체 또는 그 표현방식에 독창성이 내재하는 경우에 한해 어문저작권 형식으로 배타적 권리를 인정해 왔다.

캐나다 앨버타 법원은 Geophysical Service Inc(GSI) v Encana Corp<sup>49)</sup> 사건에서 공공연한 사실(public domain facts)과 저작권 보호가능 데이터(copyrightable data)를 구분했다. 동 사건의 원고는 상당한 투자를 들여 취득한 해저(submarine) 지진 데이터에 대해 저작권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동 법원은 원고의 독창적 견해를 반영하는 모든 데이터에는 저작권 보호를 위해 필요한 충분한 인적 저작(authorship)이 내재한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해저 지진 데이터를 저작권 보호가능 데이터라고 결론지었다. 이는 정보처리주체가 일련의 창의적 활동을 거쳐 생성해 낸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설령 그러한 개인정보가 특정 정보주체와 관련된 것이라 해도 해당

aware of actions that led to the data origination.”, 上掲書, p. 6.

44) “Observed data is simply what is observed and recorded. The emergence of the Internet as an interactive consumer medium has made it possible to observe and digitalize data in a more robust manner.”, 前掲書 42, p. 6.

45) “Derived data is data that is simply derived in a fairly mechanical fashion from other data and becomes a new data element related to the individual.”, 前掲書 42, p. 7.

46) “Inferred data is the product of a probability-based analytic process.”, 前掲書 42, p. 8.

47) 데이터 유형은 분류 목적에 따라 공표 데이터(declared data: 정보주체가 스스로 공개한 데이터), 관찰 데이터(observed data), 추론 데이터(inferred data) 및 성향 데이터(intent data: 관찰 데이터로부터 추출한 정보주체의 구매 성향 정보)로 구분하기도 한다.

48) 정보주체의 동의하에 수집된 개인정보(원시 데이터)에 대해서는 이를 수집한 정보보유자의 데이터 소유권이 인정되는 관습법이 존재한다는 견해가 있다. 前掲書 42, p. 20.

49) Geophysical Service Inc v Encana Corp. 2016 ABQB 230. 38 Alta LR (6th) 48. aff’d 2017 ABCA 125, leave to appeal denied 2017 CanLII 80435 (SCC) [Geophysical Service Inc].

정보주체의 배타적 소유권을 인정하기 어려움을 의미한다.

미국 대법원 판례는 모든 사실(facts)은 만인이 이용하는 할 수 있는 공유자산으로서<sup>50)</sup>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해 왔다.<sup>51)</sup> 저작권법상으로 사실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데이터는 소유권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다만, 그 표현방식에 한해서는 어문저작권 형식으로 배타적 권리를 인정해 왔다. 그런데 어떤 사실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극히 제한적인 상황에서는 사실과 표현방식의 분리가 현실적으로 용이하지 않은 경우가 존재할 수 있다. 예컨대, 숫자로 표시되는 데이터가 그에 해당된다.<sup>52)</sup> 그러한 경우 표현방식에 대한 어문저작권을 불허한다는 입장이 소위 ‘병합원칙(Merger Doctrine)’이다. 사실상 유일하거나 극히 제한된 표현방식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인정하게 되면, 추후 동일한 사실에 대한 혁신적 표현방식의 출현을 저해하는 역효과를 우려한 셈이다.<sup>53)</sup> 하지만 최근 *BanxCorp v. Costco Wholesale Corp.* 사건의 판례는 표현방식이 극히 제한적인 데이터더라도 그 제작 과정에서 정보처리주체의 독창성이 가미된 경우에는 저작권 보호를 인용함으로써 병합원칙에 대한 유연한 해석 입장을 밝히고 있다.<sup>54)</sup>

독창성이 없는 데이터에 대한 배타적 권리 불허 입장은 EU에서도 그리 다르지 않다. 물론 과거 EU는 독창성이 부재한 데이터라고 하더라도 사실의 편집(compiling)을 위해 모종의 투자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산권(property rights) 차원에서 그에 대한 정보처리주체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한 바 있다. 하지만 그러한 권리의 보호는 데이터 자체에 대한 저작권 보호가 아닌 투자비에 대한 재산권 차원의 보상을 위한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sup>55)</sup> 한 가지 주목해야 할

50) “[A]ll facts — scientific, historical, biographical, and news of the day, may not be copyrighted and are part of the public domain available to every person.”, *Feist Publications Inc v Rural Telephone Service Co.* 499 US 340, 111 S Ct 1282 at 348 (1991).

51) Scassa (2018), p. 5.

52) 예컨대, 동일한 시장현황 데이터(facts)로부터 분석되어 숫자로 공개되는 주가, 선물가격 등이 해당된다.

53) *New York Mercantile Exchange Inc. v. Intercontinental Exchange Inc.* 497 F (3d) 109 (2d Cir 2006) [NY Mercantile Exch].

54) 동 사건의 판례는 중고 자동차의 잔여가치를 숫자로 표현한 추정가격에 대해 저작권 보호가 가능함을 밝히고 있다. *BanxCorp v Costco Wholesale Corp.* 978 F Supp (2d) 280 (SDNY 2013).

55) *European Database Directive.* 96/9/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1 March 1996 on the legal protection of database [1996] OJ, L 77/20.  
<http://eur-lex.europa.eu/LexUriServ/LexUriServ.do?uri=CELEX:31996L0009:EN:HTML>.

사실은 최근 EU 내에서 ‘배타적 데이터 소유권(sui generis ownership rights in data)’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개인정보 소유권 확정을 위한 노력이라는 점에서 그 자체로는 고무적이지만, 법제화를 기대하기에는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인다. 개인정보가 비단 정보주체만의 소유물이 아니며, 컨트롤러나 프로세서 등 정보처리주체의 소유일 가능성도 동시에 존재한다는 초보적 결론을 밝히는 정도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sup>56)</sup>

상기 주요국들의 판례 및 정책동향에 비추어 볼 때, 데이터 소유권에 관한 현재까지의 논의 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전통적으로 데이터 소유권 문제는 주로 저작권법에 기초해 사실들의 조합물인 데이터 자체이기보다 데이터의 표현방식에 대한 어문저작권 형식으로 정보처리주체의 배타적 권리를 인정해 왔다. 만일 데이터의 표현방식이 극히 제한적일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어문저작권이 인정되지 않지만, 데이터 제작 과정에서 정보처리주체의 독창성이 투입되는 경우 데이터에 대한 배타적 권리가 인용될 여지가 존재한다. 다만, 데이터 제작에 소요된 투자비는 데이터 소유권보다 재산권 차원에서 보호 또는 보상되어야 할 문제로 이해되어야 한다.

둘째, 정보처리주체의 독창적 활동을 통해 생성해 낸 데이터에 관해서는 정보주체와 정보처리주체 모두 일정 정도의 배타적 권리를 보유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이는 파생 데이터 및 추론 데이터에 속하는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기존 법제에 의해 정보주체의 실효적 개인정보이동권을 보장하기 쉽지 않음을 의미한다. 물론 정보처리주체가 거래관계를 통해 생성한 관찰 데이터(observed data)도 전적으로 정보주체의 배타적 권리 대상이 아닐 여지가 존재한다는 견해도 있으나,<sup>57)</sup> 그러한 경우 정보처리주체의 권리는 독창성 투입에 따른다기보다 데이터 제작 투자비에 대한 재산권 보상을 위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개인정보 소유권에 대한 이해당사자 간의 갈등 문제는 실정법상에 보편타당한 객관적 기준을 마련하기에 충분한 판례 형성 이전까지는 사적 계약(private contract)에 의해 풀어나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

56) Asbroeck, et al. (2017).

57) 前掲書 7, p. 139.

## V. 국내 마이데이터 추진 동향 및 시사점

### 1. 통신 분야

우리 정부는 2018년 4차산업혁명위원회 안건을 통해 통신, 금융, 의료 등 3개 분야를 우선 대상으로 한 마이데이터 추진계획을 천명한 바 있다.<sup>58)</sup> 이에 따라 통신 분야에서는 요금제 추천서비스를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바 있다.<sup>59)</sup> 그런데 동 서비스는 정보주체의 자기 통신정보 활용도 제고를 목적으로 추진된 일종의 공익서비스 차원으로 이해될 수 있을 뿐 마이데이터의 산업화를 염두에 두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좀 더 구체적으로, 동 서비스는 이용자의 서비스 선택권 제고를 목적으로 이동전화 가입자에게 통신사가 보관하는 각자의 통화량 패턴 정보를 일괄 열람하게 하는 ‘본인통신정보 통합조회서비스’라고 규정할 수 있다. 물론 마이데이터를 재단하는 국제적 단일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혹자는 요금제 추천서비스를 마이데이터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할 수도 있겠으나, 동 서비스의 내용은 그에 동의하기에는 지나치게 초보적·단편적인 단계이다.

### 2. 의료 분야

의료 분야의 경우에는 2019년 소수의 의료기관들 중심으로 본인건강정보를 활용하는 시범사업들을 선정할 바 있으나,<sup>60)</sup> 그 성과가 알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 성과를 평가하기는 이르다. 다만, ‘데이터 공개(open data)’ 차원에서 추진된 일부 시범사업들에 관해서는 제한적 평가가 가능하다.<sup>61)</sup> 동 시범사업들은 의료 분야의 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한 의료기관간 의료정보 공유 및 활용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제한적 범위의 데이터 공개 시범사업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 본인진료정보의 제3자 제공 등 개인정보이동권의 행사 또는 마이데이터의 산업화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 분야의 시범사업은 찾아보기 어렵다.<sup>62)</sup> 다만, ‘분산형 바이오 빅데이터 모

58) 관계부처 합동 (2018. 6. 26.).

59) 뉴스핌 (2018. 10. 30.).

60) 자세한 내용은 前掲書 7, p. 90의 <표 3-5>를 참고할 것.

61) 보건복지부의 ‘진료정보 교류기반 구축사업’ 및 ‘보건의료 빅데이터 시범 사업’, 산업통상자원부의 ‘분산형 바이오 빅데이터 모델’ 등이 있다.

62) 보건복지부는 시민사회단체 반발로 인해 당초 사업(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사업)의 계

텔’<sup>63)</sup> 시범사업은 의료 분야 마이데이터생태계 하부구조 구축 차원에서 우선 전제되어야 하는 의료기관간 상이한 환자 진료정보의 파일형식(file format) 표준화라는 긍정적 요소를 내재한다.<sup>64)</sup> 하지만 그마저도 의료기관간 공유의 대상을 환자 진료 정보 자체가 아닌 그 가공정보에 국한하고 있다는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sup>65)</sup>

### 3. 금융 분야

금융 분야에서는 2018년 3월 이후 공표된 일련의 정책방안<sup>66)</sup>에 따라 가시적 정책 성과를 도출해 왔다. 우선 정부는 금융 분야 마이데이터의 근본취지를 “내 데이터 권리 찾기”<sup>67)</sup>로 설정함으로써 마이데이터의 근본취지와 양립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으며, 개인정보이동권,<sup>68)</sup> 정보보유자의 API 공개 의무, 마이데이터사업자의 업무범위 등 마이데이터의 핵심 쟁점에 관한 정책방안들도 구체화하여 왔다.<sup>69)</sup> 좀 더 구체적으로, 정부는 관련 특별법을 개정함으로써<sup>70)</sup> 국내 최초로 개인정보이동권을 법제화하였으며,<sup>71)</sup> 승인관리프로그램의 기존 관행인 스크린 스크레이핑 방식 금지 원칙을 천명하되,<sup>72)</sup> 스크린 스크레이핑 금지에 관해서는 유예 기간을 두

---

획과 달리 의료정보 활용주체의 범위를 공공기관, 의료기관, 학계 및 연구기관으로 한정하고, 산업체 후원에 의하는 연구에 대해서는 원천적으로 의료정보 활용을 제한하였다. 보건복지부 (2018), p. 10.

63) 산업통상자원부 (2017. 4. 17.)

64) 동 사업은 ‘공통데이터모델(CDM: Common Data Model)’에 기초해 의료기관별 상이한 데이터 포맷을 표준화하되, 각 의료기관의 원시 진료정보는 해당 기관 내에 그대로 보관하고 그 분석결과만 공유하는 방식을 따른다.

65) 이는 진료정보의 외부유출 및 제3자 열람 제한 원칙을 규정한 의료법 제19조(정보 누설 금지)와 제21조(기록 열람 등)가 작용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의료법, 법률 제17203호(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0.04.07.

66) 금융위원회 (2018. 3. 19.), 금융위원회 (2018. 7. 19.),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2020. 7. 10.) 등.

67) 금융위원회 (2018. 7. 19.), p. 2.

68) 금융 분야의 개인정보이동권은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권’ 또는 ‘본인신용정보 전송요구권’으로 지칭되기도 한다.

69) 권민경 (2019), p. 8.

70)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신용정보법), 법률 제17354(전자서명법) 일부개정 2020.06.09. 이하, ‘개정 신용정보법’으로 지칭함.

71) 개정 신용정보법 제33조의2(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

72) 개정 신용정보법 제22조의9(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의 행위규칙) 4항.



고 있다.<sup>73)</sup> 본인신용정보처리의 신뢰성·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 하부구조 및 마이데이터의 초기 시장 구축을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한 셈이다. 추가적으로 정부는 정보주체에게 본인신용정보 조회는 물론이고 이체·결제로 이어지는 금융거래 전 과정에 걸친 종합 디지털금융서비스인 지급지시전달업(MyPayment)을 도입하면서 마이데이터와의 연계 가능성을 열어둠으로써<sup>74)</sup> 마이데이터 산업화의 의지도 밝히고 있다.

개정 신용정보법은 본인신용정보의 소유권에 관한 입장도 제시하고 있다. 우선 정보주체가 본인이나 제3자에게 전송요구권을 주장할 수 있는 개인정보이동권의 적용대상 범위에는 제공(provided) 및 수집(collected) 신용정보가 포함되어 있다.<sup>75)</sup> 하지만 파생(derived) 및 추론(inferred) 신용정보를 포괄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가공 신용정보는 개인정보이동권의 적용대상에서 배제한다는 입장이 제시되어 있다.<sup>76)</sup> 이에 관해서는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 첫 번째는 가공 신용정보에 대한 배타권 권리는 정보주체가 아닌 정보처리주체에게 귀속된다고 해석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가공 신용정보의 소유권 판별 문제는 실정법에 의하기보다 사적 계약을 통해 해결한다. 현재로서는 정부의 의중이 이러한 두 가지 해석 중 어느 것인지를 예단하기는 어렵다. 다만, 전자일 경우에는 국제적 논의 동향에 비추어 볼 때 신용정보 주체의 권리를 필요 이상으로 제한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는 점에서 추후 적절한 제도개선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된다.<sup>77)</sup>

그런데 정부가 규정한 금융 분야 마이데이터는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을 말한다. 이는 “개인인 신용정보주체의 신용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금융기관 및 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개인신용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집하여 신용정보주체가 조회·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서비스업”이라고 풀이할 수 있다.<sup>78)</sup> 다시 말해,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의 본원적 성격은 통신 분야의 요금제 추천서비스와 유사한 본인신용정보 통합조회서비스라고 보아도 별다른 무리가 없다. 자기 신

73) 개정 신용정보법 부칙 제1조 2항에 따라 스크린 스크레이핑 금지 원칙은 동법 공포 후 1년 6개월 후(2021. 8.)에 시행된다.

74) 금융위원회 (2020. 7. 27.), p. 8.

75) 개정 신용정보법 제33조의2(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 2항 1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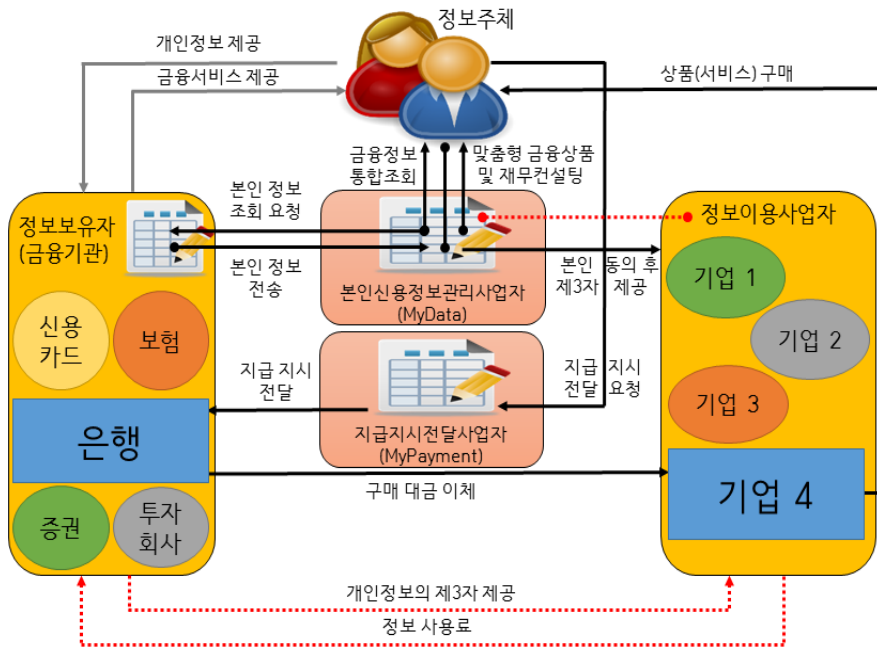
76) 개정 신용정보법 제33조의2(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 2항 3호.

77) 앞서 거론한 바와 같이, 신용정보처리주체에 대해서는 저작권 보호 차원이 아니라 데이터 제작에 소요된 투자비 보상에 비례하는 재산권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78) 개정신용정보법 제2조(정의)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2020. 7. 13.), p. 1을 참고함.

용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이동권을 “자기 신용정보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로 이전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라고 이해함을 전제로 할 때,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의 개념 정의에는 원칙적으로 자기 신용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제3자 전송요구권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림 4> 국내 금융 분야 마이데이터산업 개념도



출처: 필자 작성.

다만, 본인신용정보관리업자(마이데이터사업자)는 부대서비스의 일환으로 정보주체의 동의를 득한 경우에 한해 정보보유자로부터 수집된 본인신용정보를 제3자에게도 제공할 수 있다.<sup>79)</sup> 하지만 그러한 제3자 제공은 마이데이터 북유럽모델의 기본구조가 추구하는 개인정보처리 방식과 일치하지 않는다. 정보주체가 자신의 마이데이터 계정 및 API 활용 방식에 기초한 승인관리프로그램을 활용함으로써 정보보유자로부터 정보이용사업자로 직접 본인신용정보를 이전하는 방식이 아니라는 것이다. 오히려 그러한 제3자 제공은 정보주체의 위임에 의해 본인신용정

79)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2020. 7. 13.), p. 17.

보관리업자가 개인정보처리를 대행하는 개인정보거래 대행서비스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개인정보거래 대행서비스는 본인신용정보관리업자가 정보주체의 특정 신용정보에 대한 제3자의 니즈(needs)는 물론이고 해당 신용정보의 내용 및 보유 사실을 공히 인지함을 전제해야 한다. 즉, 현재와 같은 본인신용정보관리업자의 제3자 제공은 정보주체의 본인신용정보에 대한 실효적 통제권 행사라는 마이데이터 복유립모델의 근본취지와 양립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sup>80)</sup> 본인신용정보관리업자의 개인정보보호 의무 위반, 개인정보 유출 등의 위협으로부터도 자유롭지 않을 것임을 의미한다.

물론 그러한 우려에 대한 사후적 대응 차원에서 모종의 안전장치나 정보주체 구제(remedy) 조치를 도입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 것은 분명하다.<sup>81)</sup> 하지만 마이데이터 복유립모델의 기본구조를 참고할 때 좀 더 사전적·적극적 대안이 없는 것은 아니다. 정보주체가 정보보유자와 정보이용사업자 간에 본인신용정보가 직접 이전될 수 있도록 통제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다만, 그러한 통제권 행사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본인신용정보관리업자가 자신의 서비스에 가능한 한 다수의 신용정보 수요자(정보이용사업자) 및 공급자(정보보유자)를 회원으로 유치하고, 정보주체에게 잠재적 신용정보거래 기회에 관한 정보를 분석·자문하는 부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은 본인신용정보의 제3자 직접 제공 방식은 마이데이터 복유립모델 기본구조가 상정한 전문 중개인(middleman)에 상응하는 본인신용정보관리업자(마이데이터사업자) 역할 구현에도 효과적일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유출 위험 방지, 정보주체의 본인신용정보에 대한 실효적 통제권 행사,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의 유지 가능성(sustainability) 등에도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sup>82)</sup>

80) 마이데이터 비즈니스의 확장성 제고 차원에서 제3자 제공을 위해 정보주체로부터 사안별 동의보다 포괄적 동의를 득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견해 (前掲書 7, p. 142.)도 있다. 하지만 포괄적 동의와 정보주체의 실효적 통제권 행사 간 상충(trade-off) 관계를 고려할 때 전자는 후자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81) 참고로 우리나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예비허가 사전신청 공고를 통해 마이데이터사업자 허가요건 및 심사기준에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의 선임, 망분리 등 보안체계, 손해배상을 위한 적립금 내지 보험가입 등을 포함하고 있다. 前掲書 74.

82) 이 단락의 서술내용은 <그림 4>의 붉은 색 점선으로 표시한 부분과 관련된다.

## VI. 결론

‘마이데이터(MyData)’는 정보주체에게 자기 개인정보에 대한 ‘실효적(effective)’ 통제권을 보장하기 위해 요구되는 정보주체 중심의 개인정보생태계 또는 그 하부 구조 구축을 지향하는 수평적(horizontal) 이니셔티브이다. 모든 국가 및 산업 단위에서 공통적으로 적용 가능한 이니셔티브이며, 마이데이터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합의된 단일기준이 존재하는 것도 아니다. 그러한 목표를 지향하는 이니셔티브인 이상, 구체적으로 마이데이터를 어떻게 규정할지, 어떤 정책수단을 통해 구현할지는 전적으로 정부와 민간의 선택 사항이다.

다만, 마이데이터 북유럽모델은 정보보유자와 정보이용사업자 간의 개인정보 2차 거래에 대한 정보주체의 능동적 권리 행사에 각별히 주목한다는 점에서 여타 주요국의 마이데이터 모델과 달리 좀 더 야심찬 목표를 추구한다. 개인정보 2차 거래에 대한 정보주체의 능동적 권리 행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지 않는 마이데이터 모델은 정보주체의 자기 개인정보 통제권 확보를 지향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러한 통제권을 실효적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정보주체의 실효적 통제권 보장을 위해서는 마이데이터생태계의 상호호환성 및 신뢰성 확보 차원에서 특히 중요한 개인정보이동권의 법제화, 승인관리프로그램의 동조화, 개인정보의 소유권 판별 등 세 가지 핵심 쟁점들에 대한 정교한 제도적·기술적 접근이 요구된다.

개인정보이동권 보장을 위해서는 본인은 물론이고 제3자에게로 자기 개인정보의 이전을 요구할 수 있는 정보주체의 권리를 법제화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하지만 이는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은 아니다. 그러한 권리 행사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데이터의 파일형식, 직렬화 방식 및 구조화 형식 등에 관한 적절한 기술적 조치가 수반되어야 한다. 개인정보 이전 과정에서 정보주체가 활용하는 승인관리프로그램의 기존 관행(스크린 스크레이핑 방식)을 API 활용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도 관건이다. 후자가 전자에 비해 정보주체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이전시킬 수 있는 우월한 기술적 수단이기 때문이다.

국제적으로 논란을 거듭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소유권 문제는 개인정보이동권 보장을 좀 더 근본적으로 제약하는 장애물이다. 주요국들의 판례 및 정책동향에 따르면, 개인정보에 대한 정보처리주체의 배타적 권리 인정 여부를 판별하는 어렵 기준(rule of thumb)은 데이터 제작을 위한 정보처리주체의 독창성 투입 여부이며,

그에 대한 긍정적 판단을 전제로 데이터 자체가 아닌 데이터 표현방식에 대해 어문저작권을 인정해 왔다. 이는 정보처리주체의 독창적 활동을 통해 생성된 개인정보에 대한 소유권이 정보주체와 정보처리주체 어느 일방의 전유물이 아님을 의미한다. 또한 디지털경제 진전에 따라 점점 중요도를 더할 것으로 예상되는 파생(derived) 또는 추론(inferred)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 분할 문제는 실정법에 의하기보다 당분간 사적 계약(private contract)을 통해 유연하게 풀어나가는 것이 바람직함을 의미한다.

우리 정부는 2018년 중반부터 통신, 의료, 금융 등의 분야를 중심으로 마이데이터를 추진해 왔다. 현재까지의 국내 추진 동향에 비추어 볼 때, 통신 및 의료 분야에서 추진된 시범사업은 본격적인 마이데이터를 위한 초보적·실험적 시도임을 인정하더라도 진정한 의미의 마이데이터와는 상당한 거리감이 존재한다. 금융 분야의 마이데이터 진전 상황은 그와 대조적이다. 금융 분야에서는 특히 본인신용정보 전송요구권(개인정보이동권), 정보보유자의 API 공개 의무 등 마이데이터생태계의 상호호환성 및 신뢰성 확보에 직결된 제도적·기술적 쟁점들에 대한 일련의 정책 방안들을 비교적 신속하게 도입해 왔으며, 그 결과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허가를 목전에 두고 있다.

하지만 북유럽모델의 관점에서는 마이데이터의 근본취지를 충실히 살려내지 못하는 부분도 존재한다. 특히 우리나라 금융 분야 마이데이터사업 내용 가운데 본인신용정보의 제3자 제공은 사실상 정보주체의 위임에 따른 개인정보거래 대행서비스이다. 정보주체가 자신의 마이데이터 계정 및 API 활용 방식에 기초한 승인관리프로그램을 활용함으로써 정보보유자로부터 정보이용사업자제로 직접 본인신용정보를 이전하는 방식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금융 분야 마이데이터의 확장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해서는 향후 본인신용정보의 제3자 제공과 관련한 제도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마이데이터 진전을 위해 금융 분야가 이루어 온 그간의 정책적·제도적 성과가 여타 산업 분야에도 널리 확산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참고문헌

- 관계부처 합동 (2018. 6. 26.). 데이터산업 활성화 전략. 보도자료.
- 권민경 (2019). 『국내외 마이데이터 도입 현황 및 시사점』 (이슈보고서 19-02). 자본시장연구원.
- 금융위원회 (2018. 3. 19.). 금융분야 데이터활용 및 정보보호 종합방안. 보도자료.
- \_\_\_\_\_ (2018. 7. 19.).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산업 도입방안. 보도자료. 별첨 2.
- \_\_\_\_\_ (2018. 11.). 데이터경제 활성화를 위한 신용정보산업 선진화 방안 - 신용조회업에서 금융분야 핵심 데이터 산업으로. 보도자료.
- \_\_\_\_\_ (2020. 7. 27.).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 보도자료(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 발표 - 디지털금융의 혁신과 안정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전자금융거래법의 전면 개편을 추진하겠습니다.) 별첨.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2020. 7. 10.).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예비허가 사전신청서 접수를 진행합니다. - 마이데이터 주요 Q&A 및 허가 매뉴얼 배포. 보도자료.
- \_\_\_\_\_ (2020. 7. 13.).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허가 신청 관련 Q&A.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20. 7. 10.) 별첨.
- 뉴스핌 (2018. 10. 30.). 맞춤형 통신 요금제 추천도 빅데이터로, Retrived January 21, 2020, <http://www.newspim.com/news/view/20181030000572>.
- 보건복지부 (2018). 보건의료 빅데이터 시범사업 추진계획. 2018. 11.
- 산업통상자원부 (2017. 4. 17.).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으로 4차 산업혁명 본격 시동. 보도자료.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신용정보법). 법률 제17354(전자서명법) 일부개정(2020.06.09.).
- 의료법. 법률 제17203호(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2020.04.07.).
- 이한영·차성민 (2018). 『데이터의 국가간 이동에 관한 규제정책의 통상법적 합치성 제고방안 연구』 (중장기통상전략연구 18-03).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임준 (2019). 『데이터 소유권 관련 논의』 (KIRI 리포트 제461호). 보험연구원.
- 조성은·정원준·이시직·이창범·박규상 (2019). 『개인주도 데이터 유통 활성화를

- 위한 제도 연구』(기본연구 19-01).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전자신문 (2019. 1. 31.). 핀테크 정부 넘었더니 국회...데이터 스크래핑 금지 우려 확산, Retrieved January 24, 2020,  
<http://www.etnews.com/20190131000366>.
- 한국인터넷진흥원 (2018). 『일본의 정보은행 관련 추진동향』 (해외 개인정보보호 동향 보고서, 월간보고서 2018. 2.).  
JSON 개요, Retrieved May 15, 2020  
<https://json.org/json-ko.html>.
- OAuth와 춤을 (2012. 3. 15.). Retrieved January 20, 2020,  
<https://d2.naver.com/helloworld/24942>.
- XML. 기록학용어사전. NAVER 지식백과, Retrieved March 5, 2020,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441343&cid=42081&categoryId=42081>.
- Aaronson, Susan Ariel (2016). The Digital Trade Imbalance and Its Implications for Internet Governance. Centre for International Governance Innovation and Chatham House.
- Abrams, Martin (2016). The Origins of Personal Data and its Implications for Governance. The Information Accountability Foundation, Retrieved January 10, 2020,  
<http://informationaccountability.org/wp-content/uploads/Data-Origins-Abrams.pdf>.
- Asbroeck, Benoit Van, Debussche, Julien, & César Jasmien (2017). Building the European Data Economy: Data Ownership. White Paper, Bird&Bird.
- BanxCorp v Costco Wholesale Corp. 978 F Supp (2d) 280 (SDNY 2013).
- Declaration of MyData Principles, Retrieved October 12, 2018,  
<https://MyData.org/declaration>.
- European Database Directive. 96/9/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1 March 1996 on the legal protection of database [1996] OJ, L 77/20, Retrieved June 27, 2018,  
<http://eur-lex.europa.eu/LexUriServ/LexUriServ.do?uri=CELEX:31996L0009:EN:HTML>.
- Feist Publications Inc v Rural Telephone Service Co. 499 US 340, 111 S Ct 1282 at 348 (1991).
- Geophysical Service Inc v Encana Corp. 2016 ABQB 230. 38 Alta LR (6th) 48. aff'd 2017 ABCA 125, leave to appeal denied 2017 CanLII 80435 (SCC) [Geophysical Service Inc].

- IDC (April 4, 2019). IDC Forecasts Revenues for Big Data and Business Analytics Solutions Will Reach \$189.1 Billion This Year with Double-Digit Annual Growth Through 2022, Retrived January 9, 2020, <https://www.idc.com/getdoc.jsp?containerId=prUS44998419>.
- Nelson, Paul. Six Big Data Use Cases for Modern Business. Accenture Search & Content Analytics Spotlight, Retrieved February 2, 2020, [www.searchtechnologies.com/blog/big-data-use-cases-for-business](http://www.searchtechnologies.com/blog/big-data-use-cases-for-business).
- New York Mercantile Exchange Inc. v. Intercontinental Exchange Inc. 497 F (3d) 109 (2d Cir 2006) [NY Mercantile Exch].
- Poikola, Antti, Kuikkaniemi, Kai, & Honko, Harri. (2015). MyData – A Nordic Model for human-centered personal data management and processing. Finnish Ministry of Transport and Communications, Retrieved October 11, 2018, <http://urn.fi/URN:ISBN:978-952-243-455-5>.
- REGULATION (EU) 2016/679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7 April 2016 on the protection of natural persons with regard to the processing of personal data and on the free movement of such data, and repealing Directive 95/46/EC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O.J. [2016] L. 119/1.
- Scassa, Teresa (2018). Data Ownership. CIGI Papers No. 187. September 2018.